

예 산 총 칙

2021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922,911,657 | 57,687,350 |
| 일반회계 | 1,810,360,018 | 54,310,801 |
| 특별회계 | 112,551,639 | 3,376,549 |
| 기타특별회계 | 112,551,639 | 3,376,549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| 105,195 | 3,156 |
|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| 30,969,627 | 929,089 |
|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| 114,681 | 3,440 |
|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| 7,632,945 | 228,988 |
|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| 50,670,850 | 1,520,126 |
| 지하수특별회계 | 3,751,932 | 112,558 |
|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| 2,416,787 | 72,504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| 488,085 | 14,643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15,737,464 | 472,124 |
| 기반시설특별회계 | 303,773 | 9,113 |
|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| 360,300 | 10,809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,115,724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6,300,000천원으로 한다.